

의결권행사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2장 행사기준

제3장 행사방법

제4장 행사절차

제5장 공시 등

별지1

의결권행사에 관한 지침

제 정 2009.02.04.
개 정 2014.02.01.
개 정 2016.05.01.
규정명칭변경 2021.12.30.
개정 2024.07.12.
개정 2025.02.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 제90조, 제91조에 의거하여 회사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관주의) 회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제2장 행사기준

제3조(행사에부) ① 회사는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장기 투자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을 제외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여부, 찬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중립적 투표) 및 제6조(행사금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투자일임재산 중 의결권행사 위임계약이 체결된 투자일임재산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 및 방법은 의결권 행사 위임 계약에 따른다.

제4조(행사방향) 회사는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권익 보호
2.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성 향상
3. 법인의 내재가치 상승
4. 법인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제5조(중립적 투표) ① 회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수에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중립적 투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 가. 회사 및 회사와 특수관계인 및 시행령 제141조 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
 - 나. 회사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관계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그 계열회사
 - 2) 회사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2.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회사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 가.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경우
 - 나. 회사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관계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그 계열회사
 - 2) 회사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 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하 “주요의결사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에는 제2조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으로 회사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2. 회사가 법 제8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가목의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중립적 투표 할 것

제6조(행사금지) 회사는 법 제81제1항 및 제84조제4항에 따른 투자 한도 등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7조(교차행사 및 면탈행위 금지) 회사는 제3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5조(중립적 투표) 내지 제6조(행사금지)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행사방법

제8조(행사주체) 회사는 직접 또는 수탁회사에 대한 운용지시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게 위임장을 제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에는 의안에 대한 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참석장 제공)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요청에 따라 의사정족수 확보의 목적으로 참석장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서면행사 등)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수단 등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1조(불통일 행사) 회사는 각 집합투자기구 간에 이해상충관계가 존재하여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권을 불통일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4장 행사절차

제12조(주주총회 개최 파악) ①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권 행사 전에 충실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수탁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도록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사결정) ① 의결권의 행사 여부, 내용 및 방법 등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별지 제1호]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하며, 해당 종목 분석 담당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담당자 소속 주식운용본부장이 결정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다.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상 수탁자책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 및 결의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투자전략본부장이 본 위원회를 소집한다.

1.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상 관련 내용이 부재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사안
2. 해당 주식 또는 해당 주식을 보유한 집합투자기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3. 기타 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제14조(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투자전략본부장 또는 투자전략본부 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게 통지 또는 공고된 목적 사항 이외에 의안과 관련한 추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외부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공시 등

제15조(의결권공시대상법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다.

제16조(공시) ① 회사는 직접 또는 사무수탁회사를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그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1.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회사의 내부지침
2. 회사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 및 증권예탁증권

수

3. 회사와 의결권행사 대상법인의 관계가 시행령 제89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방법에 따라 매년 4월30일까지 직전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7조(기록 유지) 회사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내부통제)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관련 법령 및 이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부 칙(2009. 02. 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2. 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05. 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2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07. 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07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02.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02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

[별지1]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1. 재무제표의 승인
1.1.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독립성
1) 재무제표의 승인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에는 반대 투표한다.
2) 피감사회사와 외부감사인의 관계 등에 관해 공개하는 안에 찬성 투표한다.
1.2 배당정책
회사의 적정 배당정책에 의한 배당에 찬성 투표한다. 다만 배당과 관련하여 주주서한, 경영진 면담 등 주주활동을 진행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경우, 또는 배당금 지급수준이 회사의 이익규모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과소하거나 과다한 경우 반대 투표한다.
2. 정관의 변경
2.1. 회사명칭의 변경
회사명칭의 변경 안에 대해 인지도 하락이 예상되는 등 주주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반대 투표한다.
2.2. 사업목적의 추가·변경
사업목적의 추가·변경 안에 대해 기존의 사업목적과 연관성이 없거나 주주가치의 훼손 또는 사회적 책임 회피 등이 예상되는 경우 반대 투표한다. 다만, 신규수익 창출 등 회사의 미래 전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찬성 투표한다.
2.3. 회계연도 변경
최근 3년 내 주주가치 증진을 위한 것 이외의 목적으로 2번 이상 변경할 시에는 반대 투표한다.
2.4. 주주총회 결의요건 변경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변경하는 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반대 투표한다.
2.5. 주주 총회
1) 정관에 규정된 주주총회 소집공고기간을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 투표하고, 줄이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대 투표한다.
2) 주주의 직접 참석 없이 전적으로 전자적 수단이나 서면에 의해서만 개최하는 주주총회 개최 안에 대해서는 반대 투표한다.
3) 주주의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허용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2.6. 재무제표 승인권한 주체의 변경
상법 제 449 조의 2 에 따라 재무제표의 승인을 이사회에서 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는 주주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이나 배당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 또는 주주 권리 보호 방안을 명시적으로 마련하지 않는 한 반대 투표한다.
2.7. 배당기준일 변경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의일 이후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2.8. 의결주체의 변경
1) 법령상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사항으로서 주주총회 결의가 가능한 사항을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제시 없이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제한하는 안에 대해 반대 투표한다.
2) 법령상 이사회에서 결의가 가능한 사항을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2.9. 소수주주권 보호
소수주주권 행사가 용이하도록 주식보유기간이나 주식보유비율을 완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 투표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대 투표한다.
2.10. 안건 상정
1) 이익배당, 정관의 변경, 이사·감사의 선임, 이사·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등 주주총회 주요 안건 세부사항이 주주총회 전에 공시되지 않은 경우 반대 투표한다.
2) 주주총회 의안의 일괄상정을 금지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 투표하고,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는 안건과 주주들에게 인기있는 안건을 일괄상정하거나, 복수의 이사후보 안건 또는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승인 안건 등을 단일안건으로 일괄상정하는 등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일괄상정 방식에는 반대 투표한다.
2.11. 의결권 대리 행사
의결권을 대리인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경우 반대 투표한다.
2.12. 이사회 의 규모
과도한 비율로 이사증원이나 감원을 하여, 특정 이사의 의결권행사를 제한하려 하거나 이사회 활동을 제한하려 하는 경우에는 반대 투표한다.
2.13. 사외이사
1) 이사회 의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 투표하고, 낮추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2) 사외이사의 임기를 변경하는 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2.14. 시차 임기제
시차임기제를 도입하는 안에 대해서는 각 이사의 임기를 다르게 하여 전체 이사회 의 권한을 약화시키거나 집중투표 무력화 또는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경우에는 반대 투표하고, 시차임기제를 폐지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 투표한다.
2.15. 이사후보에 대한 투표 방식
이사회 후보 일괄 투표 방식에 반대 투표한다.
2.16. 이사의 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안에는 원칙적으로 반대 투표하고,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삭제하는 안에는 찬성 투표한다.
2.17. 이사 및 경영진 보상
1) 임원의 성과연동형 보상이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으로 왜곡된 성과기준에 근거하여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2) 사외이사에게 급여 등 보상의 일부를 주식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등 주가와 연계된 보상으로 부여하는 경우 퇴직 전에 매도 또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안에 찬성 투표한다.
3) 황금낙하산 계약 등 과도한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대 투표한다.
4) 보상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찬성 투표한다.
2.18. 우리스주제도
우리스주조합을 결성하거나 우리스주조합에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안에 일반적으로 찬성 투표한다.
2.19. 자본구조
1) 보통주의 액면가를 감액하려는 안에 대해서 찬성 투표한다.
2) 정관상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증가시키는 안에 대해 자본금의 증가 등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3.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
3.1 이사의 선임

1) 이사의 경우 법령상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불가능한 자,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반대 투표한다.
2) 사외이사의 경우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이었던 경우 반대 투표한다.
3)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의 경우 이사의 기준 1)항을 준용한다
3.2 사외이사의 선임
<p>사외이사 선임시 관련법령 및 이사의 선임 규정을 준용하되 아래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대 투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비영리법인 포함)의 전직 임직원으로 퇴직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 혹은 그 특수관계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이었던 자 -회사(현재 및 과거)의 외부감사회사, 그 계열법인의 피고용인 및 관계자로서 감사 또는 관계 업무를 수행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최근 3년 이내에 회사(최대주주, 계열회사 포함)와 중요한 거래관계, 협력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었던 개인 혹은 법인(법률사무소 포함)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당해 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당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자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
3.3.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거나 경영진과 독립적이지 못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후보에 대해 반대 투표한다.
3.4. 임기 중 해임 제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중 불법행위,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 또는 직무 수행에 부적임 사유가 없는 한, 임기만료 전 해임 안에 대해 반대 투표한다.
3.5. 감사위원회
1) 상법 제 415 조의 2 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없는 회사가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다만, 상법 제 409 조 제 2 항을 회피할 목적인 경우에는 반대 투표한다.
2) 상법 제 542 조의 10 에 따라 상근감사를 둔 회사가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4.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4.1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
1)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 안에 대해서는 보수 한도 또는 보수 금액 수준이 회사 및 이사회 규모의 규모, 경영 성과 등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다면 찬성 투표한다.
2) 감사의 보수 한도 수준이 감사가 충실하게 업무를 이행할 유인을 훼손시킬 만큼 과소한 경우에는 반대 투표한다.
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5.1.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부여)
1) 스톡옵션 부여계획에 대해서는 주주가치 희석의 정도가 10% 이상이거나 스톡옵션의 규모가 총 발행주식의 2%를 초과하면 반대 투표한다.
2) 사후에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조정하거나 기발행 스톡옵션을 취소하고 행사가격을 조정하여 새로운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안에 대해 일반적으로 반대 투표한다. 또한 미래 시점에 재조정, 재발행 가능성이 있는 스톡옵션 부여계획에 대해서도 반대 투표한다. 단 증자 및 소각 등 주식가치의 변동 시 기존 스톡옵션의 실질가치 및 기존주주의 주식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에는 찬성 투표한다.

3) 스톡옵션의 행사보유기간을 단축하는 안에 반대 투표한다.
4) 특정한 성과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행사 가능한 스톡옵션 부여계획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5.2. 주식보상제도
1) 경영진에게 제공되는 현금보수 중 일부를 주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에 찬성 투표한다.
2) 주식보상제도에 의해 부여된 주식을 2년 이상의 일정기간 동안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 투표한다.
6.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6.1. 위험 또는 책임을 수반하는 기업구조조정
1) 재무적, 사회적, 환경적 위험 또는 책임을 수반하는 인수합병, 구조조정 안에 일반적으로 반대 투표한다.
2)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가 아닌 단기적인 주가부양을 위해 실행되는 인적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반대 투표한다.
6.2. 기업인수 및 인수방어
1) 인수합병 자체, 혹은 이를 위한 자본금의 증가나 신주발행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 찬성 투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합된 회사의 전망, 재무 및 영업상의 이점 -합병대가의 적정성 -시장 반응 -협상 절차의 적정성 -기업지배구조와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 -자본구조의 변화 -이해상충
2) 다른 기업에 의한 적대적 기업인수 시도 시 정당한 가격을 받기 위해서 이사회와 경영자들의 대항능력을 강화시키는 안은 찬성 투표한다.
3) 부채조달에 의한 기업인수(Leveraged Buyout) 안은 재무상황, 세금 및 규제상의 혜택, 가치평가, 공정성, 이해상충, 대안 등을 고려하여 투표한다.
4) 기업의 핵심적 사업부분을 매각해 인수 매력을 떨어뜨리는 왕관보석 방어전략(Crown Jewel Defenses)이 주주들에게 적절한 가치를 가져다주지 않는 한 반대 투표한다.
5) 그린메일(Greenmail)은 인수대상기업이 인수를 시도하는 주주로부터 그 주주가 이미 인수한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프리미엄을 의미한다. 그린메일에 반대하는 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 투표하며, 그린메일의 제공에 반대 투표한다.
6.3 회사분할
회사분할에 대한 안은 분할방식, 가치평가, 공정성, 이해상충, 경영자의 인센티브,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자본구조상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 찬성 투표한다.
6.4. 영업양수도 등
1) 주주가치가 훼손될 것으로 우려되는 영업양수도에 대해 반대 투표한다.
2) 법령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요하지 않는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도 주주총회 승인 사항으로 하는 안에 찬성 투표한다.
6.5. 조인트벤처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려는 안에 대해서 제공하려는 자산의 비중, 소유지분의 비중, 재무 및 전략적 혜택,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 찬성 투표한다.
6.6. 신주인수권
1)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안에 대해서는 배제·제한의 근거, 목적, 범위, 기준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대 투표한다.

2) 신주를 제 3 자에 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발행목적, 발행 규모 및 가격, 발행 대상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7. 자본구조의 변경
7.1. 자본금 감소
자본금 감소의 안에 대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대 투표한다. -기업회생, 자본조달, 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우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유상감자인 경우 -자사주 매입을 통한 소각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
7.2. 주식병합 및 주식분할
1) 발행주식수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비례적으로 감소(증가)하는 주식병합(주식분할) 안에 찬성 투표한다.
2) 주식분할 결과 발행주식수가 비례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도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 부담 등을 위해 최대주주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행하는 경우 등 기존 주주에 해가 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찬성 투표한다.
3) 상장폐지를 피하려는 주식병합 안에 대해서는 찬성 투표한다.
7.3. 자본금의 증가
1) 회사의 경영자들이 자본금을 증가시켜 외부의 기업인수 시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반대 투표한다.
2) 발행예정주식수를 증가시키는 안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미 많은 발행가능주식수를 보유하고 있거나 두 배 이상 발행예정주식수를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반대 투표한다. 이는 발행예정주식수의 증가 이후 증자한 자금에 대한 명백한 사업계획이 없는 경우에 발행예정주식수 중 미발행주식은 독약증권이나 기타 기업인수 방어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자본금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회사의 주식이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거나 회사가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찬성 투표한다.
4)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에 대비해 법정자본금을 증가시키려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 투표한다.
7.4. 자기주식
1) 자기주식 취득안에 대해서는 회사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과거 취득의 적정성, 경영권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2) 모든 주주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개시장에서의 자기주식 매입을 제도화하려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 투표한다.
3) 만약 과거에 회사가 권한을 남용한 증거가 있거나 상법 제 341 조 제 1 항에 따른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기주식 매입 안에 반대 투표한다.
4) 경영권 보호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안에 대해서는 주주가치를 부당하게 훼손하지 않는다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5) 회사가 새로운 사업투자가 필요한 경우에 실행하는 자기주식 처분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 반대 투표한다.
6)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의 결과를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7) 주주평등의 원칙을 훼손하거나 경영권 방어에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등의 소지가 없도록 자기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등을 제한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8) 자기주식의 처분을 주주총회의 승인에 의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8.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8.1.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의 변경
1) 주주총회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를 변경하려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2) 정기주주총회나 임시주주총회를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의 경우, 경영자에게 부여하는 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반대 투표한다.
8.2. 지주회사의 설립
지주회사의 설립에 관한 안은 설립목적, 기업지배구조와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 자본구조 변화 및 재무상황,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 찬성 투표한다.
8.3. 비공개기업으로의 전환(상장폐지)
1) 회사 주식의 자진 상장폐지를 결의하는 안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반대 투표한다. -공식적인 의의신청 절차 등 소액주주의 보호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자진 상장폐지의 절차 및 과정상 문제가 있는 경우 -공개매수 가격 등 기존 주주에 대한 보상이 불합리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비공개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주식거래가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 확실한 경우 찬성 투표한다.
8.4. 청산
청산에 대한 안은 관련 요소들을 검토한 후에 사안별로 투표하되, 청산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회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찬성 투표한다.
8.5. 자본구조개편
자본구조개편은 자본구조의 단순화여부, 유동성의 증가여부, 전환조건의 공정성여부, 의결권 및 배당에 대한 영향, 자본구조개편의 사유, 이해상충여부, 기타 다른 대안의 존재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한다.
8.6. 증권의 전환
기존 주주들에 대한 희석화, 전환가격, 재무적 이슈, 경영권 이슈,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 찬성 투표한다.
8.7. 채무재조정
채무재조정안의 일환으로 보통주 혹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안은 기존 주주권의 희석 정도, 발행조건, 재무상황, 경영권상의 고려사항, 이해상충문제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 찬성 투표한다.
8.8. 주주 제안
1)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판단하되 제안의 취지, 타당성 및 위법성, 중대한 리스크의 유무, 이해상충 여부, 회사의 대응 수준,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 투표한다.
2) 제안의 배경이 되는 이슈와 관련된 회사의 관행에 대하여 중대한 논란 또는 소송의 제기 여부, 회사가 벌금·제재 등을 부과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반대 투표한다.
3) 이사회 안과 주주제안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안전에 찬성 투표한다.
4)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경우 신주의 발행이나 자사주의 매각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찬성 투표한다.